

2000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제593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1. 19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유

- 고성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

2. 주요골자

- 기금조성은 '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출연
 - 매년 60,000,000원 출연
- 기금 사용은 기금조기 증식을 위하여 2001년까지 사용억제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제35조(지방의회의결사항)
- 지방자치법제118조(예산의편성및의결)
- 지방재정법제110조(기금의운용등)
-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11조(기금의운용계획)

4. 본문 : 붙임과 같음

2000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

1.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제35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 - . 기금의 설치·운용
- 지방재정법제110조(기금의 운용 등)
 -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
 -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
- 지방자치법제118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
 -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
 - 시·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 하여야 한다.
-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11조(기금운용계획)
 -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
 -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각호사항 포함
 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항
 2. 당해연도 사업계획기 및 자금계획에관한 사항
 3.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
 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- 회계개시 40일전까지 고성군의회에 제출 심의. 의결을 받아야 함

2. 2000년도 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

- 2000년 기금조성계획
 - 기 조성액 _____ 278,320,790원
 - 2000년 조성액 _____ 89,223,000원
 - 기금출연 _____ 60,000,000원
 - 이자수입(예상) _____ 29,223,000원
 - 2000년말조성예상액 _____ 367,543,790원
- 2000년 기금사용계획
 - 기금의 조기증식을 위하여 2차 기금조성기간 2001년까지 사용억제